



2006년 유럽연합의* 임금동향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

이 글은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이 2007년 EIROnline 웹사이트에 발표한 '2006년 임금동향(Pay development 2006)' 을 요약·번역한 글이다(원문은 <http://www.eurofound.europa.eu/eiro/studies/tn0704029s/index.htm> 참고).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7, Wyattville Road, Loughlinstown, Dublin 18, Ireland.

■ 머리말

본 보고서는 15개 EU회원국과 노르웨이의 2005년, 2006년의 임금상승 경향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별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임금인상률(전체산업 및 3개 산업),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현재 임금, 성별 임금격차, 평균 소득증가 등을 살펴본다.

EIRO(유럽노사관계연구소)가 통계 기구가 아니며, 특히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국제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보고서에서는 임금 비교에 대한 과학적이고 비교가능한 정보

* EU 회원국 27개국 중에서 2004년 유럽연합 확대이전 기존 회원국 EU15(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와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국가마다 임금 구성, 노사관계, 과세, 사회보장 등의 제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임금관련 통계가 수집되고 보고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중요성 때문에 EIRO에서는 최근 전개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점, 위험요소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각종 지표 등 정보는 신중하게 파악되어야 하며 다양한 설명과 주석에 주의해야 한다.

■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평균 임금인상률

[그림 1]은 2006년 각국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평균 명목 기본급 인상률(또는 이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지표)을 보여준다.

단체교섭의 직접적인 적용 범위(일반적으로 EU15에서는 적용 범위가 높다)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단체교섭은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 국가 전체에서 임금결정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체교섭이 임금결정에서 하는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임금결정에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은 산별, 또는 노동자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 반면, 다양한 교섭의 차원(예를 들어 산업간, 산별, 기업별)에 따라 하는 역할도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임금구성, 노사관계제도의 차이는 [그림 1]의 임금인상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되었는지에 의해 설명된다.

예외는 존재하나, 주로 산별 차원의 자유교섭주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별로 산업간 협약은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는 관련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하급단체의 교섭을 위한 지침이 된다. 영국과 대다수 신생회원국에서는 기업별 교섭(또는 기업 내의 하급교섭)이 우세하다.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는 자동임금물가연동제에 따른 인상이 임금인상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1]에 나타난 임금인상률의 역할 또한 국가별로 다르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의 인상률은 산별 최저수준으로 이후 하급단체의 교섭에 따라 실질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다(또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실질적 임금인상률의 적용은 산별로 합의된다). 반면 영국과 같이 단체교섭이 분권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그림 1]의 수치가 실질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게 된다.

■ 명목임금인상률

상기 사항을 고려할 때 [그림 1]에서는 EU 15와 노르웨이의 단체교섭상의 평균 명목 임금인상률이 2005년 2.9%에서 2006년 3%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5년 임금인상률은 아일랜드가 4%로 가장 높고 임금동결 중인 네덜란드가 0.8%로 가장 낮았으며, 2006년에는 노르웨이가 4.1%로 가장 높고, 독일이 1.5%로 가장 낮았다.

EU 15의 임금인상률은 EU 전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2005년과 2006년 사이에는 소폭의 상승추세가 존재할 뿐이며, 임금교섭이 온건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을 헤집고 들어가면 국가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과 2006년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임금상승은 EU 15의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EU 15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세(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최고 수준의 인상률)를 유지하고 있으나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의 인상률은 변동이 없었으며,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하락하였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표 1>은 최근 수년간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보여준다. EU 15와 노르웨이의 경우 평균 임금인상률은 2001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05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였고 2006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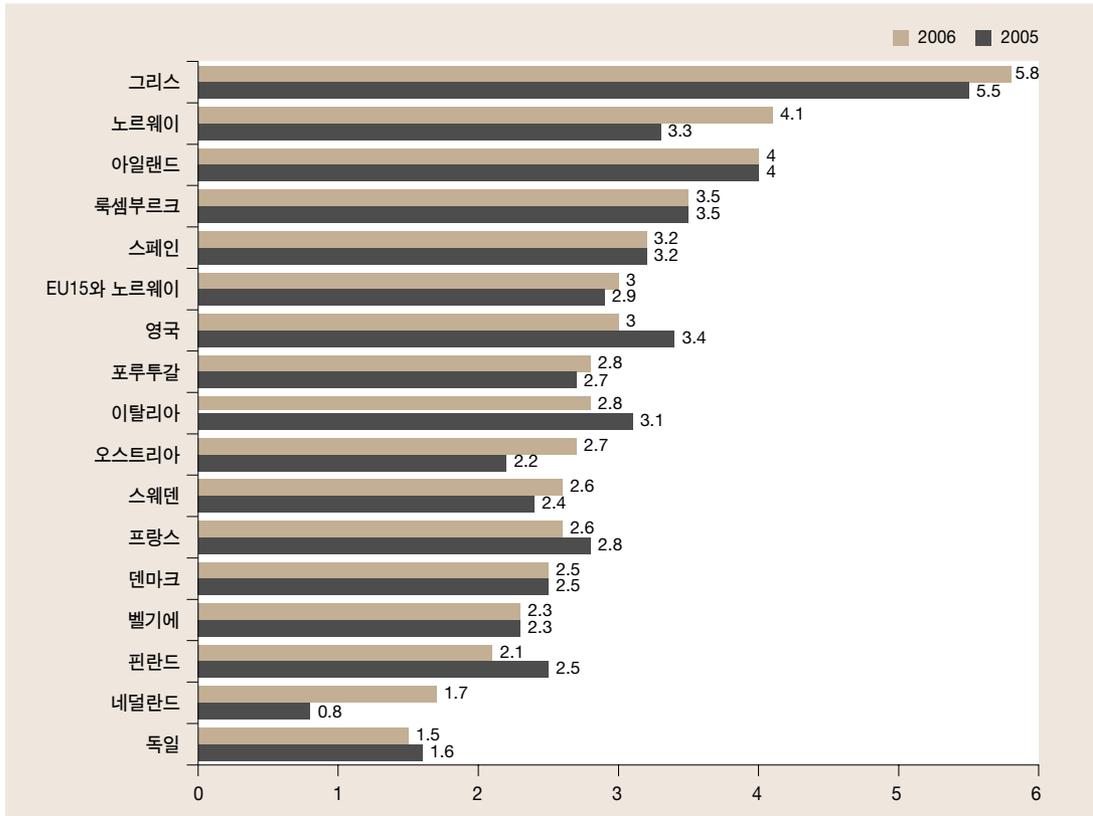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임금인상률의 평균을 산출하면 16개국(EU15과 노르웨이)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중간’ 명목임금인상 국가 : 협약상의 인상률이 평균 3~5%인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 등이 있다.
- ‘낮은’ 명목임금인상 국가 : 협약상의 인상률이 평균 3% 미만인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대부분 EU 15가 여기에 포함된다.

5년 동안 명목임금인상률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인 국가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해마다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했다.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해 온 국가는 독일이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향세를 보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임금인상률 변동폭 관련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영국(연간 임금인상의 최고치와 최저치 간의 차가 1%포인트를 밑돌았음)이다.

[그림 1] 2005년과 2006년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

(단위 : %)



- 그리스 : 자료는 그리스 일반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인상률임. 2005년 자료는 1월 1일부터 실시된 2.2% 인상률과 9월 1일부터 실시된 3.3% 인상률이 포함되어 있음. 2006년 자료는 1월 1일부터 실시된 2.9% 인상률과 9월 1일부터 실시된 2.9% 인상률이 포함되어 있음.
- 네덜란드 : 네덜란드 노동감시의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CBS)은 '특별보수'를 제외하고 2005년 인상률을 0.7%, 2006년 1.6%로 산정하였음.
- 노르웨이 : 피고용인 전체에 대해 단체협약상 기본급 인상률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TBU 자료는 임금드리프트(특정 산별에서 평균 이상의 봉급 인상, 전년도로부터의 이월 효과, 보너스 등 전체 연간 임금인상률을 의미함).
- 덴마크 :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찾을 수 없음. 사용된 자료는 2004~2007년 산별협약에 관한 것임. 산별협약에서는 최저인상률만 정해놓고 이후 지역의 교섭을 통해 정확한 인상률을 정함. 자료는 매년 3월 시행되는 최저 시급인상률을 나타냄.
- 독일 : 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단체협약 문서국의 자료는 피고용인 1인당 단체협약상 평균 임금인상률임.
- 룩셈부르크 : 단체협약 임금인상률 자료가 없음. 사회보장감사관실(GSSI)에서 발표한 평균 시간당 임금자료를 사용하였음.
- 벨기에 : 고용, 노동, 사회대화를 위한 연방기구의 자료는 민간부문(민영화가 진행 중인 공기업 제외)의 산별 단체협약

상의 임금인상을 나타냄. 2006년 자료에는 최근 분기의 예상치가 포함되어 있음.

- 스웨덴 : (근무시간 축소 효과 예상치 등) 상기 자료는 스웨덴중재사무소의 것으로서 대부분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2004년 교섭에서 타결된 3개년 협약에 기초함. 2005년 타결된 협약에서는 2005년 2.6%, 2006년 2.5%의 평균 인상률이, 2006년 타결된 협약에서는 2006년 2.8%의 평균 인상률이 제시되었음.
- 스페인 : 출처는 노동사회부의 노동통계 간행물.
- 아일랜드 : 2005년 자료는 민간부문만을 나타내며 지속적 진보(Sustaining Progress) 임금협약의 2번째 부분 2차 단계의 1.5% 인상률과 2번째 부분 3차와 4차 단계의 2.5% 인상률을 합한 것임. 2006년 자료는 새로운 국가 차원의 협약인 '2016년을 향하여(Towards 2016)' (저임금 근로자에게 추가로 0.5% 임금인상을 단행)에 의해 2006년 12개월의 기간 동안 민간부문 근로자에게 시행되는 4%의 인상률을 의미함. 공공부문에서는 이와는 다른 임금제도가 적용되어 2005년 평균 인상률이 5.25%(저임금근로자를 위해서는 0.5% 추가인상), 2006년 5.5%임.
- 영국 : 영국노동문제연구소(LRD)의 직장보고서 자료는 최저 기본급 인상률에 관한 것임. 2005년의 자료는 2005년 12월까지 12개월에 관한 것이고, 2006년 자료도 2006년 12월까지 12개월에 관한 것임. 평균은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 협약 수를 토대로 산출되었음.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통계청의 자료는 전년도 추계에 합의된 대부분의 단체교섭이 포함되어 있음.
- 이탈리아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자료는 산별 단체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함. 2006년 자료는 2005년 동기 대비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률을 나타냄.
- 포르투갈 : 사회보장과 고용부의 고용 및 노사관계국(DGERT) 자료.
- 프랑스 :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상기 자료의 출처는 프랑스 통계청으로 평균 소득 증가에 관한 것임. 2006년 자료는 잠정수치임.
- 핀란드 : 자료는 중앙임금정책협약이 평균 연간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중앙임금정책협약은 2005년 3월부터 시간당 €0.18 또는 월간 €30.0을 인상하고, 산별 분배를 위해 추가로 0.6% 인상을 하기로 했으며, 2006년은 6월부터 1.4% 인상에 산별 분배를 위해 추가로 0.4%,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산별에 '평등증분'으로 0.3%를 인상하기로 함.

출처 : EIRO.

〈표 1〉 2000~2006년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U15와 노르웨이	3.2	3.8	3.5	3.1	3.1	2.9	3.0

출처 : EIRO.

■ 실질임금인상률

실질임금인상률을 위해 [그림 2]에서는 유럽통계청이 산출한 2004년 12월~2005년 12월, 2005년 12월~2006년 12월의 연간 물가인상률을 소비자물가(HICP)를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임



금인상률을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하였다.

EU 15개국과 노르웨이의 단체협약상의 평균 실질임금인상률은 2005년 0.6%에서 2006년 0.8%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평균 실질임금인상률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0.2%포인트 상승하였다. 명목임금인상률의 경우는 0.1%포인트였다(그림 1 참조). 2005년 실질임금인상률은(단체협약상 인상률은 아니지만) 아일랜드가 2.1%로 가장 높고, 임금을 동결한 네덜란드의 경우가 -1.2%로 가장 낮았다. 2006년의 경우 노르웨이가 1.9%로 가장 높고, 독일은 -0.5%로 가장 낮았다. 2005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질임금인상이 있었다. 2006년에 독일 등에서는 물가 상승이 명목임금인상률을 뛰어넘었다.

명목임금인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동향, 실질임금인상에서도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상승세는 그리 크지 않다. 국가별로 보면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2005년과 2006년 평균을 상회하는 실질임금인상률을 기록하였다.

EU 15와 노르웨이 중 11개국(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포함)의 임금인상률이 상승한 반면(아일랜드와 영국 등) 5개국에서는 하락하였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EU 15와 노르웨이의 실질임금 상승(표 2 참조)을 살펴보면 평균인상률은 2003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주춤하여 2005년까지 하락했으며 2006년에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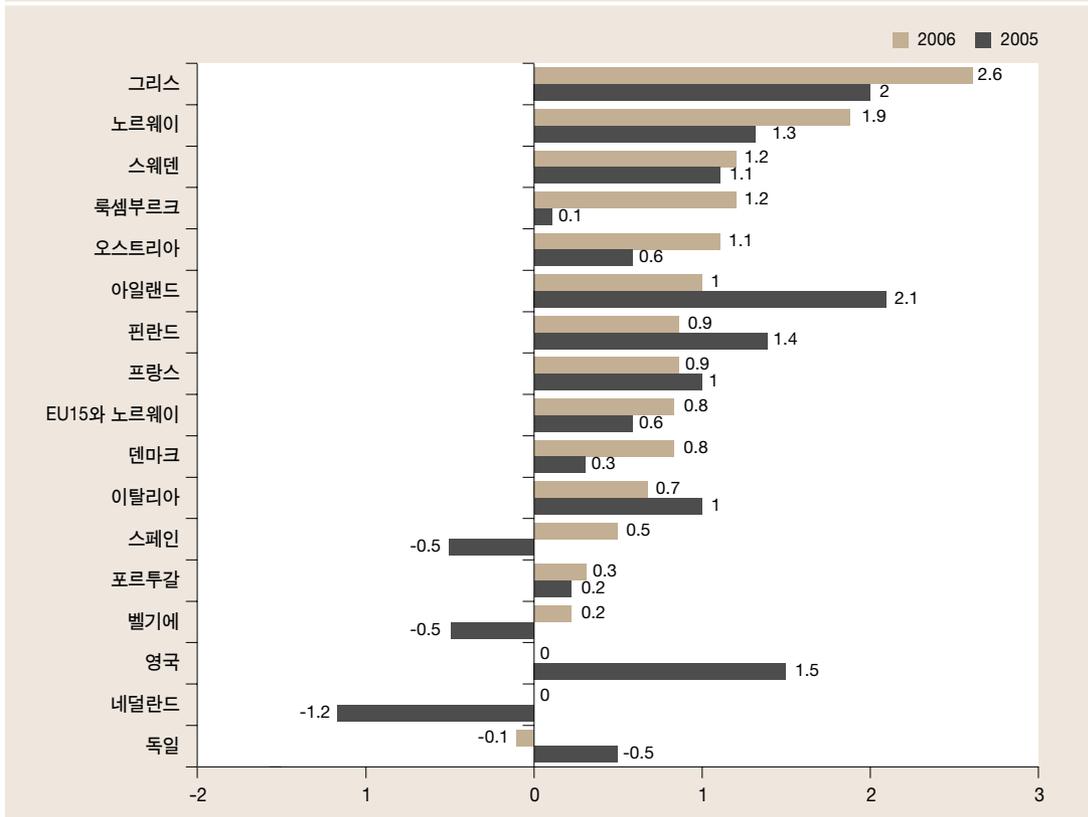
2002년과 2006년 사이 연간 실질임금 상승의 평균을 구하면 조사대상 16개국을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높은’ 실질임금 상승 국가 : 연간 인상률 평균이 2~4%인 국가. 이에선 그리스, 노르웨이가 포함되어 있다.
- ‘중간’ 실질임금 상승 국가 : 연간 인상률 평균이 1~2%인 국가.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영국이 포함되어 있다.
- ‘낮은’ 실질임금상승국가(최대집단) : 연간인상률 평균이 1% 미만인 국가. 대부분의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가 여기에 포함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실질임금 상승의 변화의 규모를 분석해 보니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포르투갈, 스웨덴 등으로 최대 연간 인상률과 최저 연간 인상률의 차이가 1%포인트보다 적었다. 일반적으로 실질임금인상률은 명목인상률보다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다.

[그림 2] 2005~2006년 물가상승 조정 후 단체협약상 평균 임금인상률 (단위 : %)



출처 : EIRO and EU 통계청.

<표 2> 2000~2006년 물가인상 적용한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U15와 노르웨이	0.5	0.8	0.9	1.3	1.1	0.6	0.8

출처 : EIRO.

■ 산별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

개요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 전체의 발전 상황을 검토하여 제조업(금속산업), 서비스부문(은행), 공공부문(지방정부)을 대표하는 3개 산업을 선택하여 단체협약상의 임금 상승 관련 자료를 취합하였다. 산별의 자료가 앞에서 소개한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는 정확할 것으로 보지만 산별 자료의 사용에도 주의가 요구되며 각 자료의 주석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산별 임금인상률을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노사관계제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 인상률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된다. 최신 관련 산별협약에서 제시된 기초 인상률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몇몇 경우에 사업장 또는 지역 차원에서 타결된 교섭의 평균치 또는 중간값을 구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영국, 네덜란드의 은행부문).
- 산별의 정의, 산별교섭의 구조는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따라서 동종간 비교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 보너스, 다양한 형태의 추가수당 등 실질임금이 단체협약상의 인상률을 반영한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 (예를 들어 벨기에, 독일의 지방정부와 같이) 몇몇 경우에 일회성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상승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임금인상이 정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 자동임금물가연동제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처럼) 임금인상률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 산별, 기업별 교섭의 상대적 역할도 중요한 변수이다.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은행 제외) 등의 국가에서처럼 산별협약은 일반적으로 최저 인상률만을 정하고 향후 하급단체의 교섭에서 정확한 인상률이 정해지도록 한다.
- 다양한 단체협약, 관련 임금인상이 단행된 시기는 제각각으로 연초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드물다.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처럼) 몇몇 국가에서는 다년협약이 적용되는데 이때 임금인상이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연간 인상률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 단순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등 교섭이 별개로 진행되는 곳일지라도 해당 근로자를 하나의 분류로 간주한다(예를 들어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의 금속산업과 룩셈부르크의 은행).
-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처럼) 지방정부에 관한 인상률(그림 5참조)은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EU15와 노르웨이

2005년 평균 명목임금인상률은 은행 3.2%(경제 전체평균을 0.3%포인트 상회), 금속산업 3.1%(경제 전체평균을 0.2%포인트 상회), 지방정부 2.6%(경제 전체평균을 0.3%포인트 하회)였다. 2006년에는 금속산업이 3.3%(경제 전체평균을 0.3%포인트 상회)로 선두에 나섰고 은행 3.2%(경제 전체평균을 0.2%포인트 상회), 지방정부가 가장 뒤쳐져 3.1%(경제 전체평균을 0.1%포인트 상회)였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EU 15와 노르웨이의 평균 연간 임금인상률은 금속산업 3.2%(경제 전체평균과 동일), 은행 3.1%, 지방정부 3.0%였다. 따라서 8년의 기간 동안 은행과 지방정부의 임금은 금속산업과 경제전체의 임금을 하회하였다.

금속산업

2005년 명목임금인상률은 그리스 6.4%(엄밀히 볼 때 협약상의 인상률은 아님)에서 네덜란드의 1.8%까지 다양하다(그림 3 참조). 2006년에도 그리스가 6%로 최고의 명목임금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최저 명목임금인상률은 1.9%인 핀란드였다. EU 15개국과 노르웨이의 금속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005년 3.1%에서 2006년 3.3%로 소폭 상승하였고, 이는 2005년 경제 전체 평균(그림 1 참조)보다 0.2%포인트, 2006년 경제 전체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2005년과 2006년 사이 인상률은 6개국(핀란드 최저치)에서 하락한 반면, 7개국(이탈리아 최고치)에서 상승하였으며 3개국에서 변동이 없었다.

2005년 금속산업의 임금인상률은 11개국(독일 최저치)에서 전체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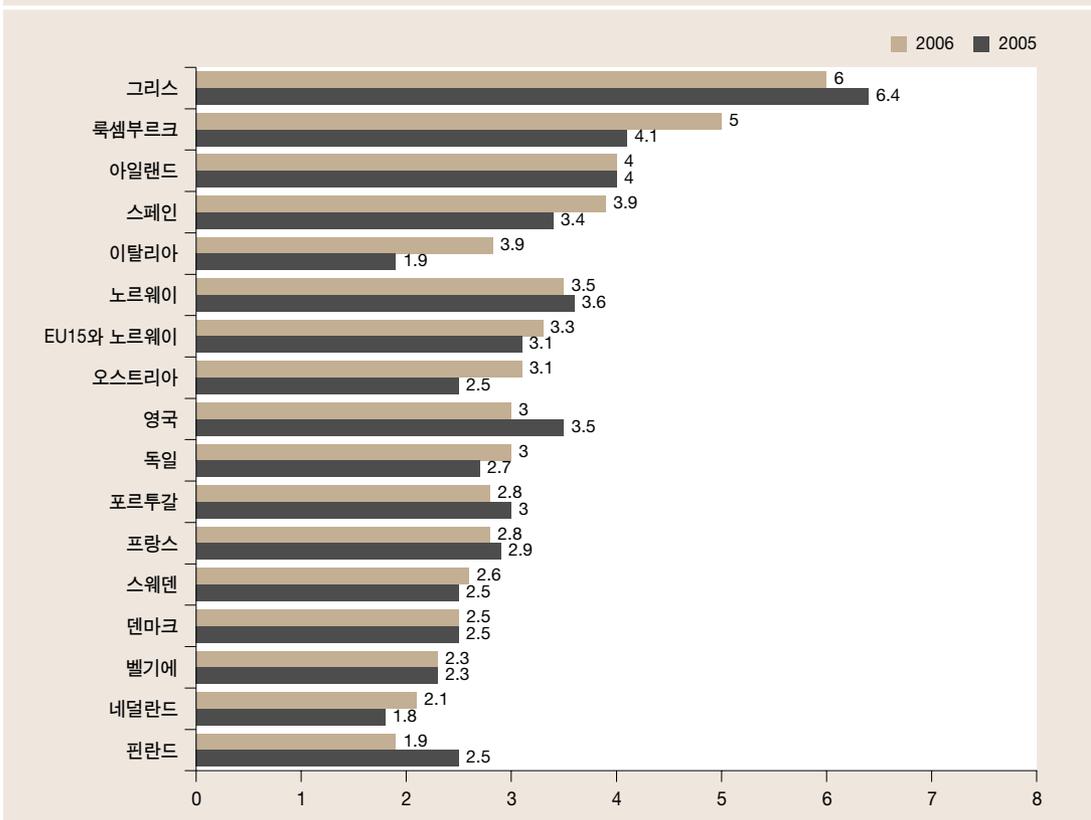


높았으며, 4개국에서 평균 임금인상률과 동일하였고, 1개국(이탈리아)에서 낮았다. 2006년의 경우에는 7개국(독일, 룩셈부르크 최고치)에서만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았고, 6개국에서 평균과 동일하였고, 3개국(이탈리아 최저치)에서 낮았다.

EU15와 노르웨이에서 금속산업은 2005년 3.1%, 2006년 3.3%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기록하였다. 2004년 임금인상률은 3.2%, 2003년 2.9%, 2002년 3.5%, 2001년 3.6%, 2000년 3.4%, 1999년 2.9%였다. 따라서 최근 수년 사이 특별히 눈에 띌 만한 경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3] 2005년과 2006년 금속산업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

(단위 : %)



- 그리스 : 단체협약과 임의결정을 토대로 한 자료는 단순근로자와 기술자에 대한 것임. 2005년 인상률은 1월의 2.7%, 9월의 3.8%의 인상을 합한 것임. 2005년 인상률은 1월 3.0%, 9월 3.0%의 인상을 합한 것임.
- 네덜란드 : 자료는 관련 산별협약에 관한 것으로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 40개월 동안 4.4%의 임금인상, 2005년 9월 0.5%, 2006년 7월 0.75%의 일회성 보상의 기초가 되었음.
- 노르웨이 : TBU 자료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 외에도 예를 들어, 임금드리프트, 이월 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05년 자료는 금속가공의 단순근로자, 2006년 자료(TBU산출 3.5%)는 모든 산업의 단순근로자에 대한 것임.
- 덴마크 : 자료는 2004~2007년 산별협약에 관한 것으로 최저임금만을 정하고, 향후 교섭을 통해 인상률을 확정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함. 자료는 매년 3월 적용되는 시급에 대한 최저인상률임.
 - 독일 : 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단체협약 문서국의 자료. 2005년 Baden-Württemberg의 '시험적 협약', 2006년 자료는 North-Rhine Westphalia의 '시험적 협약'에 관한 것임. 인상률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적용됨.
 - 룩셈부르크 : 생산직 근로자들의 수치이며, 매년 2.5%의 자동물가연동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을 포함함.
 - 벨기에 : 자료는 금속산업의 단순근로자를 위한 산별협약(공동위원회 111)에 관한 것임. 2005년 인상률은 7월부터 2.26% 자동물가연동된 것을 의미하며, 2006년 인상률은 7월부터 1.65%의 자동연동에 1월부터 적용된 0.6% 인상률을 합한 것임(기업별로 사전에 별도 교섭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 스웨덴 : 출처는 IF Metall 연맹으로 2004~2006년의 국가 차원의 금속가공 부나 협약에 관한 것임.
 - 스페인 : 자료의 출처는 노동사회부의 노동통계간행물로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기계설비를 제외한 금속가공에 관한 것임.
 - 아일랜드 : 자료는 국가 차원의 산별협약에 의한 임금인상을 보여줌(그림 1의 주석 참조).
 - 영국 : 영국노동문제연구소(LRD)의 직장보고서 자료는 협약의 평균 (평균은 대상근로자가 아니라 협약 수를 토대로 산출)을 나타내며, '제조, 엔지니어링, 금속제품' 분야 최저기본급의 중간인상률을 가리킴.
 - 오스트리아 : 봉급생활자, 그래픽 근로자, 언론인 연맹(GPA-DJ)의 자료로 산별협약에 관한 것임. 인상률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12개월의 기간에 적용되었음.
 - 이탈리아 : 자료는 민간부문 금속산업의 주요 협약에 관한 것임.
 - 포르투갈 : 포르투갈 산업 및 에너지근로자 노동조합(SINDEL-UGT) 자료.
 - 프랑스 : 출처는 프랑스 통계청, 고용 및 연대부.
 - 핀란드 : 자료는 산별협약에 관한 것임.
- 출처 : EIRO.

■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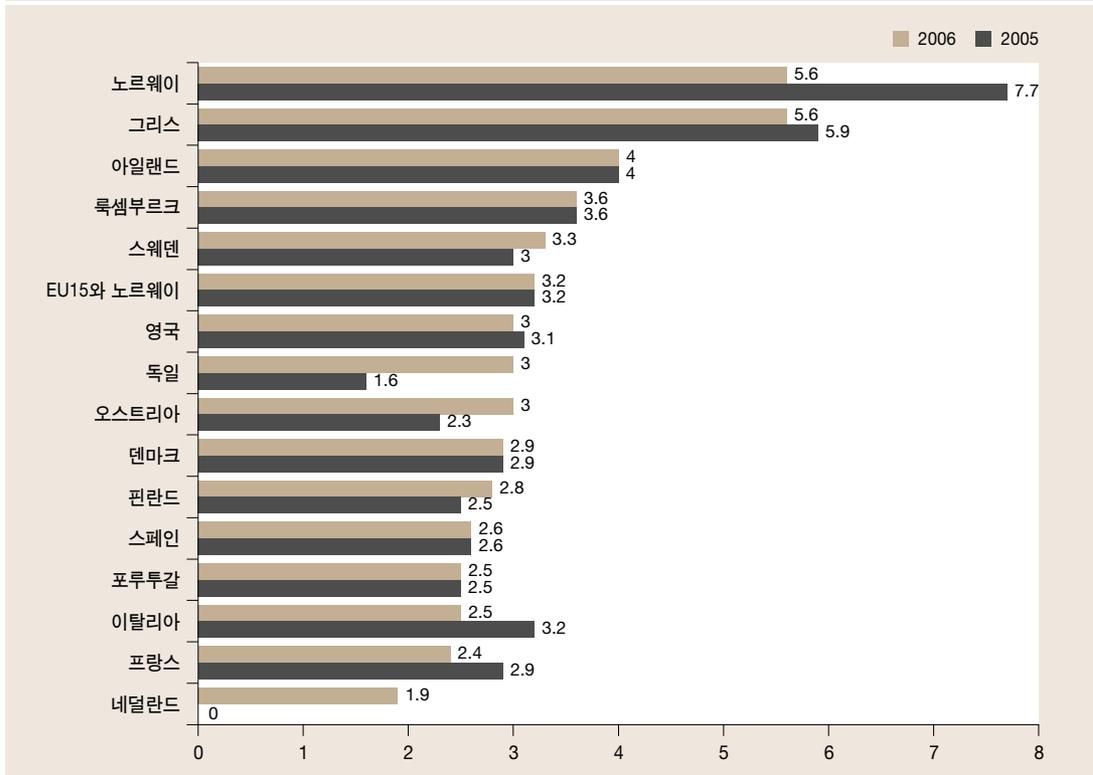
2005년 해당 정보가 있는 15개국(벨기에 자료 없음(그림 4의 주석 참조))에서 은행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노르웨이의 7.7%부터 임금동결을 한 네덜란드의 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에는 인상률의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어 노르웨이와 그리스가 5.6%, 네덜란드가 1.9% 수준이었다(그림 4 참조).

2005년 은행의 임금인상률은 전체 산업의 평균인상률보다 9개국(노르웨이 최고치)에서 높았고, 3개국에서 평균인상률과 동일하였으며, 3개국(네덜란드 최저치)에서 낮았다. 2006년 은행의 임금 인상률은 전체 산업의 평균 인상률보다 8개국(독일, 노르웨이 최고치)에서 높은 반면, 2개국에서 평균과 동일하였고, 5개국(스페인 최저치)에서 낮았다.



EU15와 노르웨이의 은행 평균 인상률은 2005년과 2006년 모두 3.2%로 안정적이며, 2005년 경제 전체 평균을 0.3%포인트 웃돌았고 2006년 평균보다는 0.2%포인트 높았다. EU 15와 노르웨이의 은행 평균 인상률은 2004년 2.9%, 2003년 2.9%, 2002년 3.4%, 2001년 3.6%, 2000년 3.3%, 1999년 2.6%였다.

[그림 4] 2005년과 2006년 은행업의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 (단위 : %)



- 그리스 : 자료는 단체협약과 임의결정을 토대로 하고 있음. 2005년 인상률은 1월 2.97% 인상과 9월 2.88% 인상을 합한 것임. 자료는 '정규 직원'에 관한 것이며, '보조직원'의 인상률은 2005년 5.6%, 2006년 6.0%, 청소직원의 인상률은 2005년 5.6%, 2006년 6.4%였음.
- 네덜란드 : 2005년 은행권에는 중앙에서 합의된 임금동결 조치가 단행되었음. 2006년 자료는 5대 은행(ABN-Amro, ING, Fortis, Rabobank, NS Real)의 기업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과 소규모 은행의 산별 협정에 따른 임금인상의 평균을 나타냄.
- 노르웨이 : TBU 자료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 외에도 예를 들어, 임금드리프트, 이월 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은행과 보험이 해당됨.
- 덴마크 : 자료는 산별 단체협약(산별협약에서 실질 인상률이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임금교섭을 하지 않는 표준제

도를 운영함)에 관한 것임. 인상률은 매년 7월부로 적용됨.

- 독일 : 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단체협약 문서국의 자료는 기본급의 인상률만을 가리키며, 정액의 급여나 특별보너스는 제외함. 인상률은 매년 9월부로 적용됨.
- 룩셈부르크 : 사무직 근로자의 수치로, 매년 2.5%의 자동 물가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을 포함함.
- 벨기에 : 2005년과 2006년 은행에서 산별협약이 도출되지 못했음(공동위원회 310). 기존 협약은 백분율에 의한 인상이 아니라 물가연동제와 일괄지급에 대한 규정만이 있을 뿐임.
- 스웨덴 : 출처는 금융산업연맹으로 은행과 금융 분야의 산별협약에 관한 것임. 2005년 자료는 2004~2005년 2개년 협약에 따라 정해진 인상률 6%의 절반임. 2006년 자료는 2006~2008년 3개년 협약에 따라 정해진 인상률 9.9%의 1/3임.
- 스페인 : 자료의 출처는 노동사회부의 노동통계 간행물로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한 은행과 보험에 관한 것임.
- 아일랜드 : 자료는 국가 차원의 산별협약하의 임금인상률을 나타냄. [그림 1]의 주석 참조.
- 영국 : 영국 노동문제연구소(LRD)의 직장보고서 자료는 협약의 평균 (평균은 대상근로자가 아니라 협약 수를 토대로 산출)을 나타내며 '금융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최저 기본급의 중간 인상률을 가리킴.
- 오스트리아 : GPA-DJP 자료는 산별협약에 관한 것임. 인상률은 매년 2월부로 적용됨.
- 이탈리아 : 자료는 금융산업의 주 협약에 관한 것임.
- 포르투갈 : 출처는 SBSI(Sindicato dos Bancários Sul-Ilhas).
- 프랑스 : 출처는 프랑스통계청, 고용 및 연대부.
- 핀란드 : 자료는 산별 단체협약에 관한 것임.

출처 : EI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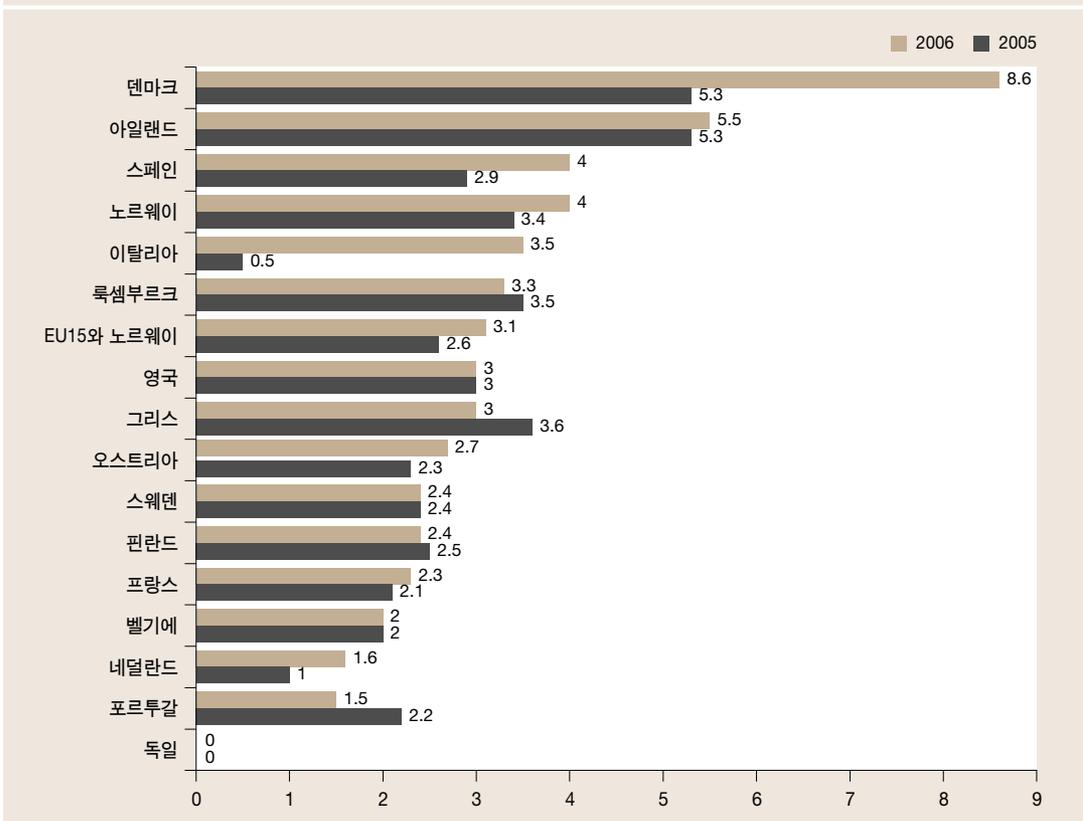
■ 지방정부

2005년 EU 15개국과 노르웨이의 지방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명목임금인상의 범위는 덴마크와 아일랜드 5.3%에서 독일의 0%(독일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액 일괄 지급)였고 2006년 덴마크 8.6%에서 독일의 0%(정액 일괄 지급)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인상률은 2005년 2.6%(경제 전체 평균보다 0.3%포인트 낮다. 그림 1 참조)에서 2006년 3.1%(경제 전체 평균보다 0.1%포인트 높다)로 증가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사이 인상률은 8개국(덴마크 최고치)에서 증가한 반면, 4개국에서 변동이 없었고, 4개국(포르투갈 최저치)에서 하락하였다.

2005년도 지방정부의 임금인상률은 8개국(그리스, 이탈리아 최고치)에서 국가 평균 인상률을 밑돌았고, 3개국에서 국가 평균 인상률과 동일했으며, 5개국(덴마크 최고치)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2006년도 지방정부의 임금인상률은 8개국(그리스 최고치)에서 국가 평균 인상률을 밑돌았으며, 2개국에서 평균과 동일하였고, 6개국(덴마크 최저치)에서 평균을 웃돌았다.

EU 15와 노르웨이의 지방정부 평균 임금인상률은 2005년 2.6%, 2006년 3.1%로 2005년의 경우 경제 전체 평균보다 0.3%포인트 낮은 반면 2006년에는 평균보다 0.1%포인트 높았다. EU 15와 노르웨이의 2004년도 인상률은 3.2%, 2003년은 2.8%, 2002년과 2001년은 3.2%, 2000년은 3.0%, 1999년은 2.7%였다. EIRO가 자료 기록을 시작한 이래 2005년의 인상률이 가장 낮았으나 2006년 보다 일반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5] 2005년과 2006년 지방정부의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 (단위 : %)



- 그리스 : 사법(private law) 계약하에 근무중인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추정치. 이들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결정됨. 법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에게는 이와는 다른 임금인상률이 적용됨.
- 네덜란드 : 자료는 네덜란드 467개 시당국에서 근무하는 193,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에 관한 것임. 2005년 인상률은 6월부터 적용되었으며 2006년 인상률은 2월부터 적용되었음.
- 노르웨이 : TBU 자료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 외에도 예를 들어, 임금드리프트, 이월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덴마크 : 출처는 지역정부 임금자료. 2005년 임금인상은 4월 실시된 2.2% 인상과 10월의 3.1% 인상을 합한 것임. 2006년은 4월 4.5%, 10월 4.1%의 인상을 합한 것임.

- 독일 : 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단체협약 문서국의 자료. 2005년과 2006년에는 백분율에 의한 임금인상은 없었음. 다만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300를 지급받았음.
 - 룩셈부르크 : 지방 공무원의 수치로, 매년 2.5%의 자동물가연동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을 포함함.
 - 벨기에 : 자료는 매년 2%의 자동물가연동으로 인한 인상만을 보여줌. 추가적인 임금인상은 지역의 협약/협정서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2004년이나 2005년 12월 왈로니아 지방정부에서는 1%의 임금상승을 실시할 수 있었음. 반면 플라망 지역정부는 연말 수당을 획일적으로 €100 인상했고 2006년에는 식권에서 €100 인상하였음.
 - 스웨덴 : 스웨덴경제연구소(KI) 자료는 주요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평균 인상률을 나타냄. 단 순근로자의 평균 인상률은 2005년 2.9%, 2006년 2.9%였으며, 사무직근로자의 평균 인상률은 2005년 2.0%, 2006년 2.0%였음.
 - 스페인 : 자료의 출처는 노동사회부의 노동통계간행물로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행정, 국방, 사회보장, 역외적용단체'를 가리킴.
 - 아일랜드 : 자료는 국가 차원의 산별협약에 따른 공공부문 인상률을 가리킴. 2005년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0.5%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음.
 - 영국 : 급여자료국(IDS)의 2005년 8월, 2006년 10월의 임금보고서 자료는 영국과 웨일즈에 대한 내용임. 스코틀랜드 인상률은 2005년에는 2.95%, 2006년 2.5%임.
 - 오스트리아 : 임금인상은 지역(Länder) 차원에서 법에 의해 결정. 자료는 시청종업원연맹(GdG)자료 ; 임금인상은 매년 1월부로 적용.
 - 이탈리아 : 자료는 지역 및 지방 행정당국을 위한 분야별 협약을 가리킴.
 - 포르투갈 : 인상률은 협의를 거쳐 정부 명령으로 매년 1월에 결정됨.
 - 프랑스 : 출처는 프랑스통계청, 고용 및 연대부.
 - 핀란드 : 출처는 핀란드통계청(Tilastokeskus).
- 출처 : EIRO.

■ 최저임금

EU15개국 중 9개국은 법적으로 또는 산별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 놓고 있다. [그림 6]은 2005년과 2006년 이들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정치단체와 노사단체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며 몇몇 국가에서는 일종의 연동제를 통해 인상되기도 한다.

200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로서 9%의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네덜란드는 인상률이 0%이었다. 2006년의 경우 5.9%를 기록한 영국이 인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아일랜드가 임금에 변동이 없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005년 3.9%에서 2006년 3.3%로 약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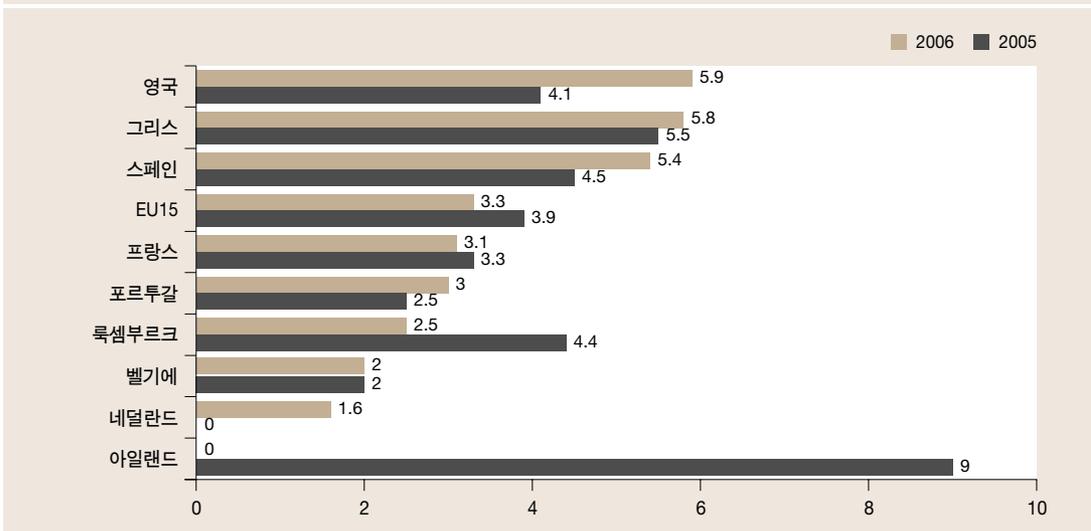
락했다. 따라서 두 해 모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전체 산업의 단체협약상의 평균 인상률보다 높았으나 2006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5개국(영국, 네덜란드 최고치)에서 상승하였으며 3개국(아일랜드 최저치)에서 하락하였고 벨기에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200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단체협약상의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국가는 모두 3개국(특히 룩셈부르크), 높은 국가는 5개국(특히 아일랜드)이었다. 그리스에서는 두 지표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였다. 2006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단체협약상의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국가는 모두 4개국(특히 아일랜드), 높은 국가는 4개국(특히 영국), 두 지표가 동일한 국가는 그리스이다.

EU 15국 중 조사대상 9개국에서는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5년 3.9%, 2006년 3.3% 하락하

[그림 6] 2005년과 2006년 각국의 성인 최저임금 인상률

(단위 : %)



- 그리스 : 상기 자료는 그리스 일반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여줌. 2005년 최저임금 인상은 1월의 2.2%, 9월의 3.3% 인상으로 구성되었음. 2006년의 경우 1월의 2.9%, 9월의 2.9% 인상으로 구성되었음.
- 네덜란드 : 임금동결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최저임금도 동결하였음. 2006년 임금인상은 1월부터 실시된 0.62%의 인상과 7월부터 실시된 0.94%의 인상으로 구성되었음.
- 룩셈부르크 : 2005년 최저임금인상률은 법에 의한 1.9%(1월) 인상과 자동물가연동으로 인한 임금인상률 2.5%(10월)를 포함하며, 2006년 인상률은 자동물가연동으로 인한 임금인상률(12월)만 포함함.

- 벨기에 : 법적 효력이 있는 노사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물가연동제를 따르며,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적용됨.
- 스페인 : 임금인상은 1월부로 법적으로 적용됨.
- 아일랜드 :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정협약에 따르며, 2005년 임금상승은 5월부터 적용됨. 2006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음(2007년 1월부로 임금이 9% 인상되었음).
- 영국 : 자료는 성인의 시급을 나타냄. 매년 10월 정부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
- 포르투갈 : 임금인상은 매년 1월부로 법적으로 적용됨.
- 프랑스 : 임금인상은 매년 7월 정부에 의해 적용됨. 2005년 임금인상은 아직 주당 근로시간이 39시간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을 의미함. 다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변경한 시기에 따라 달라 지기는 하나 임금인상은 보다 낮음(1.7% 정도). 2006년 임금인상은 주당 근로시간 35시간을 도입한 이후 제각기 운영 되던 임금을 통합하는 과정이 완료된 후 운영 중인 단일 시급을 가리킴.

출처 : EIRO.

〈표 3〉 2005년과 2006년 각국별 성인의 최저임금 (각국 통화 및 유로화 환산)

국 가	주 기	2005년	2006년
벨기에	월급	€1,234.20	€1,258.90
프랑스	시급	€8.03	€8.27
	월급	€1,217.88	€1,254.28
그리스	일급	€26.41	€27.96
	월급	€591.18	€625.97
아일랜드	시급	€7.65	€7.65
룩셈부르크	시급	€8.69	€8.91
	월급	€1,503.42	€1,541.00
네덜란드	일급	€58.38	€59.29
	주급	€291.90	€296.45
	월급	€1,264.80	€1,284.60
포르투갈	월급	€374.70	€385.90
스페인	일급	€17.10	€18.03
	월급	€513.00	€540.90
영국	시급	GBP 5.05 (€7.39)	GBP 5.35 (€7.85)

- 유로화로 환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의 2005년과 2006년의 평균 환율이 사용되었음.
- 벨기에 : 상기 임금은 21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21.5세 이상, 6~12개월의 근무경력, 12개월을 초과하는 근무경력을 가진 근로자는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
- 프랑스 : 상기 임금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그림 6의 주석 참조. 월급은 주 35시간 근무 기준.
- 룩셈부르크 : 상기 임금은 비숙련 근로자용임. 숙련근로자는 이보다 20% 높은 임금을 받음.

출처 : EIRO.

였는데(2004년 4.9%, 2003년과 2002년 3.5%, 2001년 4.9%, 2000년 2.8%, 1999년 2.9%, 1998년 2.6%), 이는 EU 15국의 단체협약상의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2005년 1.1%포인트, 2006년 0.4%포인트 높은 것이다.

<표 3>은 2005년과 2006년 실질 적용 최저임금(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각국 통화로 보여주고 있다(해당 임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그림 6의 주석 참조. 한 해에 2회 이상의 임금인상이 있을 경우 표 3의 임금은 최종 임금인상을 나타낸다).

■ 청년 임금

상기에서 검토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은 성인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10개국에서는 나이가 어리거나 미숙련 근로자에게는 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표 4>는 이러한 임금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4> 2006년 청년 및 미숙련 근로자의 최저임금

국 가	일반임금에 대한 백분율	적용대상
벨기에 (연령과 경력에 기초한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3의 주석 참조)	94%	20세
	88%	19세
	82%	18세
	76%	17세
	70%	16세 이하
아일랜드	90%	근무 2년차 18세 이상 근로자, 공인된 훈련 또는 연구 기간의 마지막 시기(1개월에서 1년 존속)를 수행 중인 18세 초과 근로자
	80%	근무 1년차 18세 이상 근로자, 공인된 훈련 또는 연구 기간의 2/3(1개월에서 1년 존속)를 수행 중인 18세 초과 근로자
	75%	공인된 훈련 또는 연구기간의 1/3(1개월에서 1년 존속)을 수행 중인 18세 초과 근로자
	70%	18세 미만
룩셈부르크 (성인임금을 받는 숙련, 미숙련 근로자의 비율)	80%	17세
	75%	15세, 16세

국 가	일반임금에 대한 백분율	적용대상
네덜란드	92.86%	17세 미만
	85%	22세
	72.5%	21세
	61.5%	20세
	52.5%	19세
	45.5%	18세
	39.5%	17세
	34.5%	16세
영국	30%	15세
	83.18%	18~21세 근로자, 근무 첫 6개월인 또는 공인된 훈련을 받는 22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한 임금(development rate)*.
	61.68%	실습생이 아닌 16~17세 근로자

* 2005년 임금은 성인근로자 임금의 87.62%였음. 2006년 성인근로자 임금과의 격차는 임금보다 성인근로자 임금의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증가하였음. 2006년 10월부터 성인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함.

출처 : EIRO.

■ 성별 임금격차

단체협약과 최저임금관련법의 명시적인 임금조건은 성 중립적이며, 남녀의 임금과 인상률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이러한 조항을 두는 경우 임금평등에 관한 EU법과 개별 국가의 법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대상 국가 모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 [그림 7]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시급 기준으로 여성의 평균 소득을 남성 임금의 백분율로 표시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16개국의 국가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성별 임금격차는 포르투갈(24.7%)에서 가장 크고 이탈리아(5.2%)가 가장 적었다.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 국가에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이 있고,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이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가별 자료가 존재하는 국가(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격차가 오히려 소폭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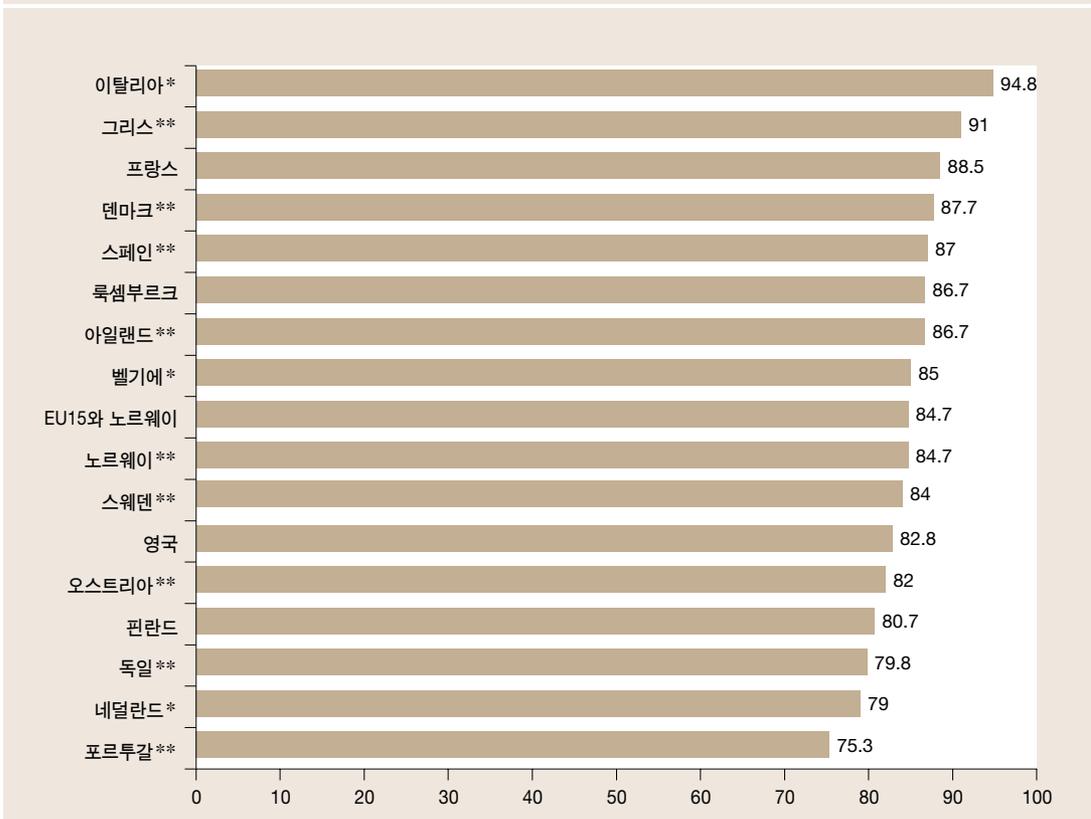
EU15와 노르웨이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5.3%로 이는 2005년의 18.1%보다 다소 낮은 수준



이다(2004년 17.4%, 2003년 18.6%, 2002년 19.2%, 2001년 20.4%). 연도별로 임금격차가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은 성별 임금통계의 특징으로 보인다. 임금격차의 축소가 이렇게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단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연도별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자료의 출처와 성격이 변해서이기도 하다(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임금격차의 경우 전년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림 7] 여성 평균 소득(남성 평균 소득의 백분율로 표시)

(단위 : %)



- 상기 자료는 2006년 자료(예외 : * = 2004년, ** = 2005년). 아래 주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평균 시급을 가리킴.
- 그리스 : 유로통계청 자료.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6~64세 유급 근로자 전체의 총 시간당 소득을 나타냄.
- 네덜란드 : CBS 자료.
- 노르웨이 : 노르웨이통계청(SSB) 자료.
- 덴마크 : 덴마크통계청 자료의 평균. 지방정부(87.7%), 정부부문(90.5%), 민간부문(84.8%).
- 독일 :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자료. 시급보다는 '전체 임금 격차'를 나타냄.
- 벨기에 : 벨기에통계청의 소득구조 조사 자료. 제조업 분야(NACE C-F)와 서비스 분야(NACE G-K)의 전임근로자의

월 소득을 나타냄. (사회보장자료에 기초한) 보다 포괄적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는 플랑드르에 관해서만 존재하며 2004년 연간 총 전임임금의 83.4%였음.

- 스웨덴 : 스웨덴통계청(SCB) 자료. 연령 및 교육 수준과 같은 변수에 대해 표준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SCB자료는 92.0%임.
 - 스페인 : 유로통계청 자료(잠정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6~64세 유급 근로자 전체의 총 시간당 소득을 나타냄.
 - 아일랜드 : 중앙통계청(CSO) 자료.
 - 영국 : 영국통계청(ONS) 자료. 근무시간과 소득에 관한 연례조사.
 - 오스트리아 : 유로통계청 자료.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6~64세 유급 근로자 전체의 총 시간당 소득을 나타냄.
 - 이탈리아 : 국가경제노동위원(Cnel) 자료.
 - 프랑스 : 출처는 프랑스통계청, 고용 및 연대부.
 - 핀란드 : 핀란드통계청의 급여 및 봉급 통계를 통해 예측.
- 출처 : EIRO.

■ 평균소득

지금까지 본 보고서는 단체협약과 법규정에 기초하여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집중 조명하였다. 근로자 소득의 실질적 증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척도는 소득 자료로서, 이는 개인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하며 이에는 보너스나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8]에서는 2005년과 2006년 평균 소득 증가에 관한 각 국가별 자료를 보여준다.

EU 15개국과 노르웨이에서 2005년 평균 소득 증가율은 포르투갈의 4.3%부터 독일의 0.5% 범위에 있었다. 2006년은 노르웨이가 4.1%로 1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독일은 0.7%로 바닥을 유지했다. EU 15개국과 노르웨이의 평균 소득 인상률은 2005년 2.8%에서 2006년 2.9%로 약간 증가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사이 평균 소득 인상률은 6개국(이탈리아 최고치)에서 상승하였고 (룩셈부르크, 스웨덴) 2개국에서 변동이 없었으며(포르투갈 최저치) 8개국에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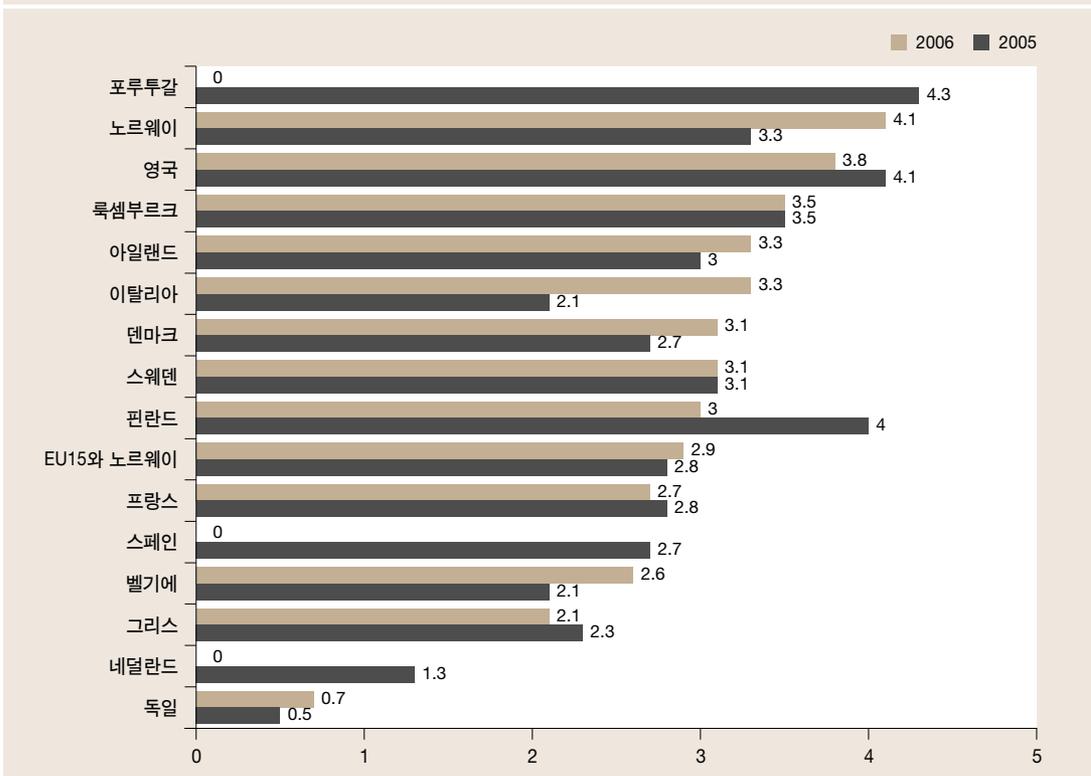
소득의 평균 인상률은 2005년과 2006년 2.8%로 안정적이었다(2006년 평균은 2005년 보다 적은 수의 국가에 관한 것이다). 2004년 2.9%, 2003년 3.4%, 2002년 3.9%, 2001년 4.3%(이전에는 1998년 이후 상승세를 보임)로 하향세는 수년간에 걸쳐 나타났다.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자료와 비교를 하면, 몇몇 국가에서 단체협약에서 최저 수준만을 정해 둔다든지, 또는 국가마다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다든지 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왜곡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덴마크, 핀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보다 높다. 그러나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소득증가율이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EU 15개국과 노르웨이에서 소득의 평균 인상률은 2005년과 2006년 소득의 평균 인상률은 단체협약상의 평균 임금인상률과 거의 동일하다. **KLI**

[그림 8] 2006년과 2005년 평균 소득 증가율

(단위 : %)



- 오스트리아는 2005년, 2006년 모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2006년의 자료가 없음(일부의 경우 2006년 자료는 부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음). 'EU15와 노르웨이'는 2005년 15개국, 2006년 12개국임.
- 그리스 : 그리스통계청 자료(ESYE). 실질소득의 연간 인상률을 보여줌.
- 네덜란드 : 2005년 자료의 출처는 CBS.
- 노르웨이 : 그림 1의 주석 참조.
- 덴마크 : 덴마크통계청 자료의 평균(지방정부 - 2005년 2.2%, 2006년 3.6%, 정부부문 - 2005년 3.0%, 2006년 2.5%, 민간부문 - 2005년 2.8%, 2006년 3.1%).

-
- 독일 :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 피고용인 1인당 전체 급여 및 봉급의 연간인상률을 보여줌.
 - 벨기에 : 중앙경제이사회의 추정치(CCE-CRB).
 - 스웨덴 : 스웨덴 중재사무소의 자료. 2006년 자료는 11월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한 것임.
 - 스페인 : 2005년 자료는 스페인통계청의 INE 급여비용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임.
 - 아일랜드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 자료. 민간부문의 평균제조업 소득을 가리킴(2005년 공공부문의 경우 5.5%). 2006년 자료는 9월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한 것임.
 - 영국 : 영국통계청의 평균 소득지표에 기초. 2005년 자료는 2004년 동기 대비 2005년 12월까지 3개월의 기간의 평균 소득증가를 나타냄. 2006년 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2006년 9월까지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 증가를 보여줌.
 - 이탈리아 : 이탈리아통계청 자료. 제조 및 서비스(행정분야 제외)의 소득을 가리킴. 2006년 자료는 11월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한 것임.
 - 포르투갈 : 노동 및 연대부의 조사 자료에 기초한 2005년도 자료는 2005년 4월까지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것이며, 행정, 1차 생산분야 및 가사서비스의 일부는 제외함.
 - 프랑스 : 프랑스통계청, 고용 및 연대부 자료. 2006년 자료는 잠정치.
 - 핀란드 : 핀란드통계청 자료.